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
읍면에서 관리해온 건축물대장의 관리업무가 지적과 『부동산관리계』로
일원화 됨에 따라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개정코자, 파주시행정기구설치
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을 요구함.

□ 주요골자

건설도시국 지적과 분장사무중 "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"를 신설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항중 "제22호"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u>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</u> 제7조 (건설도시국) ①~⑤ (생략) 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~21 (생략) <u>(신설)</u>	<u>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</u> 제7조 (건설도시국) ①~⑤ (현행과같음) 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21 (현행과 같음) <u>22.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업무</u>	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지적 및 부동산관 리의 일원화

경 기 도

♀ 441-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/ ☎(0331)249-4093 / (행)4093,2224 공재광

문서번호 자치 12200 - 2769
 시행일자 1996. 9. 9. (년)
 (경유)

받 음 받는곳 참조
 참 조 (파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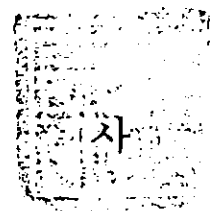
선결	시장	경리	지	
접	일자 시간	1996. 9. 9.	결	부시장
수	번호	1868	재	행정국장
처 리 과			공	총무과장
담 당 자	이재현		람	시정재장

제 목 지방자치단체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·정원 승인

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른 지적기구·인력을 따로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관계 자치법규의 개정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인력은 업무이관 부서의 인력을 자체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덧붙임 : 정원승인서 1부. 끝.

경 기 도 지



받는곳 러

機 構 · 定 員 承 認 書

기 관 명	직 위	직 급	정원	비 고
과 천 시	지 적 과 장	지방지적사무관	1명	
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구 리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남양주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무보직 6급 상계 조정
오 산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시 흥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군 포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의 왕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하 남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용 인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파 주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이 천 시	부동산관리계장	지방지적주사	1명	
양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여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화 성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광 주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연 천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포 천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가 평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양 평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안 성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김 포 군		지방건축 · 지적7급	1명	
	계		42명	

※ 정원시행일 : 1996년 9월 5일

건축물관리업무의 지적부서이관에 따른 지적기구인력보강

□ 기구·인력보강(안)

- 시·구 : 지적과에 「부동산관리계」 설치
 - 계장요원 6급 1명 신규증원, 실무인력은 자체조정
- 군(출장소) : 토지관리계를 「부동산관리계」로 명칭 개편
 - 실무인력 7급 1명 신규증원, 부족인력은 자체조정

□ 정원조정 지침

- 시·구의 신설되는 「부동산관리계」는 「기구·정원규정 대통령령」 제5조제3항3호에 의거 최소한 1계3인(계장포함)의 정원책정을 원칙으로 함
- 군으로 건축물관리업무이관에 따른 읍·면의 자체정원 조정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건축물관리 업무량이 많이 환원되는 읍·면이나 지역실정상 행정수요가 적은 읍·면의 인력을 조정
- 시·구본청의 정원은 건설과·주택과등 「건축물관련부서」에서 업무이관과 함께 인력도 조정함을 원칙
- 군(출장소)의 토지관리계를 부동산관리계로 명칭을 개편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장의 직렬을 직무와 부합하게 조정
(행정6급 → 행정·지적6급)

□ 행정사항

- 빠른시일내에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을 마무리하여 민원처리등 대민불편에 차질없도록 특별한 조치강구
- 9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 완료 시행